

# 부 산 지 방 법 원

## 제 6 형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12고합1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, 아동·  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, 마약  
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피 고 인 윤○○ , 일용노동자  
주거 부산 남구  
등록기준지 부산 남구

검 사 오재현(기소), 신기련(공판)

변 호 인 변호사 정노찬(국선)

판 결 선 고 2013. 1. 11.

### 주 문

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.

압수된 필로폰 0.3그램(증 제1호), 사용한 1회용 주사기 4개(증 제2 내지 5호)를 각 몰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500,000원을 추징한다.

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.

## 이 유

### 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2010. 9. 28.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. 11. 2.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.

#### 1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성매수등)

피고인은 2012. 7.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○○○ 나이트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황○○(여, 16세)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황○○에게 13만 5천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.

#### 2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,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성매수등)

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.

#### 가. 2012. 8. 15.자 범행

피고인은 2012. 8. 15. 03: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○○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(일명 '필로폰', 이하 '필로폰'이라고 한다) 약 0.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, 계속하여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.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미성년자인 위 황○○의 팔에 주사해 주며, 위 황○○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황○○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었다.

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,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며,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.

나. 2012. 8. 18.자 범행

피고인은 2012. 8. 18. 23:00경 부산 남구 ○○동에 있는 ○○중학교 근처 가정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.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, 계속하여 필로폰 약 0.03그램을 포도주스에 타 미성년자인 위 황○○에게 주어 마시게 하며, 위 황○○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황○○에게 10만 원을 건네 주었다.

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,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며,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.

### 3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

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.

#### 가. 필로폰 투약

피고인은 2012. 11. 12. 14:00경 부산 남구 우암2동에 있는 ○○○○ 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.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.

#### 나. 필로폰 소지

피고인은 2012. 11. 12. 16:25경 위 ○○모텔 301호에서 투명 비닐봉지 안에 필로폰 약 0.32그램을 넣어 바지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.

### 증거의 요지

#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황○○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

1. 마약류 감정결과통보

1. 수사보고(황○○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윤○○이 보낸 문자메시지 촬영첨부)

1. 판시 전과 : 범죄경력 등 조회, 수사보고(출소일자 확인), 개인별 수감현황 등

## 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,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, 제4조 제1항(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, 유기징역형 선택),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, 제4조 제1항, 제2조 제3호 나목(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, 징역형 선택), 각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(아동·청소년 성매수의 점, 징역형 선택)

1. 누범가중

형법 제35조[다만,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]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[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. 8. 18.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]

1. 작량감경

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(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)

1. 몰수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

1. 추징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(추징액 산정 근거 :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× 5회)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1. 이수명령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, 제2항 본문

**양형의 이유**

[처단형의 범위] 징역 5년 ~ 25년

[유형의 결정]

-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의 점 : 마약범죄, 투약·단순소지 등, 제3유형(향정 나.목 및 다.목)

[특별양형인자]

- 특별가중요소 : 동종전과(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)

[권고형의 범위] 징역 1년 ~ 3년(가중영역)

[수정된 권고형의 범위] 징역 5년 이상(처단형에 따름)

[선고형의 결정] 징역 5년

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·소지하고,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황○○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수 행위를 하며, 그 과정에서 위 황○○에게 두 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,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,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, 쾌락을 추

구할 목적으로,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적·육체적 성장에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.

다만,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, 위 황○○는 이 사건 전에 이미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신상정보 등록

피고인은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사 각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성매수등)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,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이광영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허정인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나상아 \_\_\_\_\_